

이한익 하도급국장 초청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6월 1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한익 하도급국장을 초청하여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찬간담회에서 이한익 하도급국장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정책방향과 공정화지침 개정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익 국장은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에 관하여 프랑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를 예로 들면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대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토록 하고 시너지효과 제고와 관계없는 부분은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 실패현상이므로 엄격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280만개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종사업체수의 비율이 71.7%에 달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84.6%가 하도급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중소기업체가 5개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율 또한 전체 중소기업체수의 62%로 일본의 2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의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의존도가 50% 이상이 넘는 업체의 비율도 42%로 전속도의 심화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불공정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한익 국장은 이러한 전속도의 심화로 나타나는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개선과 근절을 위한 공정화정책방향으로 크게 여덟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금년 4월 1일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지침」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하도급대금결제방식 및 제도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결제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하고, 어음만기일도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자의 지급요청이 있을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때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하도급대금만큼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신용카드와 팩토링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체결제수단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토록 업계에 권장하고 있으며, 셋째, 어음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사업자의 당좌개설 요건의 제한과 아울러 신용정보관리기간 연장 및 신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넷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직권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직권실태조사를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중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점진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다섯째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현행 건설, 제조업외에 용역서비스 위탁거래로 확대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중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나 화물자동차운송 등의 용역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섯째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받게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올해에는 현재 11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곱 번째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산을 위해서도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지위남용 및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 과징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범위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적발시 하도급거래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원사업자에게는 과중한 제재조치가 처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경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국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단체에 본 협회를 추가하여 하도급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하도급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문 1 납품이 수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금의 지급 비율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정하는가?

답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며, 월단위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질문 2 선급금은 특수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50%이상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선급금을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법령의 적용은 어떠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현장에 사용토록 지시할 경우 경영간섭에 해당하는가?

답변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나, 운영자금으로의 사용은 차후 문제이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은 현금과 어음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99 공정거래위탁교육 대규모기업집단 및 약관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수) 대 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간부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신영선 서기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경제력집중 현황과 문제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과 경제력집중억제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부당한 자원행위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본 협회에서는 5월 27일(목)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기관 및 약관관련업체와 관련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금융기관 및 약관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에서는 관련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엄기섭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공정거래법 및 제도 일반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약관의 의의와 기능, 약관규제제도와 타 법률과의 관계, 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의 주요 내용과 부당성 판정 기준 및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약관과 관련된 주요 심결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 협회의 공정거래교육에 대한 문의는 협회 기획부(☎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차 공정거래모니터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9일(수)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공정거래모니터 요원에 대한 '99년도 제1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1차 직무교육에서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 공정거래모니터 요원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YWCA연합회 등 7개 소비자단체 모니터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신동



권 서기관, 소비자기획과 곡세봉 서기관, 약관제도과 남병호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정 거래법 및 제도 일반에 대한 사항과 모니터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및 약관제도와 새로 제정된 표시·광고법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협회 명칭변경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안내

협회 명칭변경

현행 본 협회의 명칭이 협회의 기능이나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호칭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회원총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99년 6월 11일부로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The Korea Fair Trade Association)로 변경하고 더욱 새롭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또한 본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협회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성있고 공정한 분쟁조정에 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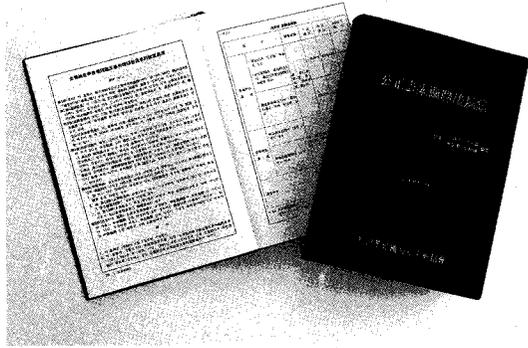
'99년도 한국공정거래협회 주요 사업

-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운용방향을 포함한 업종별·분야별 교육 및 연수
-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활동과 심결사례, 주요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학계 및 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정책제언 및 해외경쟁정책 동향 등을 수록한 전문지인 월간「공정경쟁」, 발간·배포
- (3) 「'97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지침 내용 등을 보완·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해설집 발간·배포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보완 작성
- (5)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와 제도 운영내용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공정거래정책당국과 민간업계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정거래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을 자율 조정
- (7) 회원사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지속 실시

'99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문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올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2) 기업결합의신고요령 3) 기업결합심사기준 4) 지주회사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5)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기준 7)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사업지단체활동지침 10)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1)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에관한지침 1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14)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
|---|--|

-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 관한규칙
-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24)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5) 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번호사보수 규정

II.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확인율
 - 2)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3) 선급금등지연이자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5) 하도급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7) 과징금부과기준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IV.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 3)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4) 상가등의분양및임대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6)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7)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8)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규정
 - 9)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10) 주요소등석유판매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V.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VIII. 공정거래위원회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2.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전결규정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서부(☎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